

#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6. 9. 25

나. 회부일자 : '96. 9. 25

3. 제안이유

○ 시·도에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상한수를 규정한 대통령령 개정으로 우리도에 1개 국 증설이 가능하고, 국장 정원도 승인되어 업무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화관광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을 설치하기 위함임.

4. 주요골자

○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, 다음 사무를 분장

- 문화예술의 육성
- 문화재, 천연기념물, 종교, 음반판매업소 관련 업무
- 체육진흥 및 관련 시설의 관리
- 관광의 진흥
- 청소년 관련 업무

○ 문화관광국 신설에 따라 현재의 내무국 및 공업경제국 분장사무 중 중복이 되는 업무를 삭제

- 내무국 - 문화예술 육성,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, 청소년 관련 업무
- 공업경제국 - 관광의 진흥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증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실·국·본부 및 과 담당관의 설치 범위인 11실·국·본부이내와 45과·담당관이내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존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흡수해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문화관광국 신설에 따르는 추가 인원의 증가는 없으며

분장사무로는

- 문화예술의 육성
- 문화재, 천연기념물, 종교, 음반판매업소 관련 업무
- 체육진흥 및 관련 시설의 관리
- 관광의 진흥
- 청소년 관련 업무등

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.